

	취업창업운영위원회 운영규칙		규정번호	5-0-13
			제정일자	2011.01.01
			개정일자	2015.10.01
			개정번호	Ver.4 총페이지 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본 대학 학생의 취업 및 창업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결과 평가를 통해 향후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이고 슬기로운 직업전문인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제2조(명칭 및 기능) 이 위원회의 명칭은 동양미래대학교 취업창업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대학의 취업 및 창업 계획 수립, 운영에 관한 사항
2. 기업체 순방과 취업 및 창업 업체의 발굴 . 확대 .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
3. 기업체에 취업 추천에 관한 사항
4. 취업 및 창업 홍보에 관한 사항
5. 해당 학부(과)의 취업률 제고에 관한 사항
6. 취업 및 창업 운영 결과 평가 및 환류
7. 학생이력관리 지침에 정의된 학생 이력 관리 업무
8. 기타 취업 및 창업, 학생 이력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이 된다.
2. 위원은 산학협력부처장, 기술창업지원센터장, 학부(과)가 추천한 일반교원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5.10.1.>
3.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직무) 위원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.
2. 위원은 제2조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한다.

제5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년2회 실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한다.
2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보고 및 시행)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7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. <개정 2015.10.1.>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